

환경마크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 품 우 / 환경처 기술개발과 화공기좌

1. 머릿말

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확대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생활도 지속적으로 풍요성과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풍요성과 편리성 추구 때문에 소비생활로 인한 쓰레기배출, 대기·수질 오염물질배출, 유해화학물질 확산 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요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재의 소비생활방식을 환경보전형 소비생활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으며, 기업체도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상품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즉, 소비자의 소비생활방식과 기업체의 상품개발 방법을 환경보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보전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에 와 있으며, 이러한 소비생활방식과 상품개발방법을 자발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최초로 독일에서 환경마크제도를 고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이미 성공적인 환경보전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2. 환경마크제도의 내용

환경마크제도란 상품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증제도로써 "특정상품이 동일 목적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환경마크로서 인정

· 표시해주는 제도이다. 환경마크제도는 녹색마크(Green Mark) 또는 이마크(E-Mark) 제도라고도 하고 있으며, 이마크(E-Mark)에서 영문자 E는 "환경"을 의미하는 "Environment" 또는 "Ecology"의 약자이다. 환경마크는 기존 공산품품질기준 등을 만족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일정수준이상으로 개선된 제품에 한하여 부여하게 되며, 환경마크가 붙거나 붙을 수 있는 상품을 "환경상품"이라고 한다.

3. 환경상품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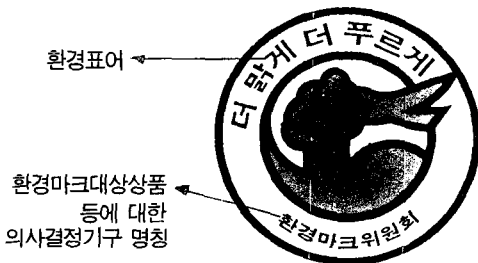
환경상품이라 함은 동일 목적의 타제품에 비해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들을 말하며, 원래부터 환경에 부담이 적은 상품(자전거 등)은 제외된다. 예를들면 재생종이를 이용한 종이제품은 종이자원이 재활용되므로 종이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목재사용을 줄여 산림파괴도 줄일 수 있는 등 천연펄프로 만든 종이제품보다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92. 5. 15일 현재 아래와 같이 재생종이를 포함한 종이 및 그 제품류 등 4종류이다. 그러나 아직 환경마크가 붙은 상품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금년 6월말 이후에야 문방구·수퍼마켓·백화점 등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상품종류	적합기준	관련제품
1. 재생종이를 포함한 종이 및 그 제품류	50% 이상의 재생종이가 포함되어야 함.	공책, 원고지, 편지봉투, 메모지, 복사지, 컴퓨터용지 등
2. 재생종이를 포함한 화장지류	90% 이상의 재생종이가 포함되어야 함.	종이수건, 화장실용 두루마리 화장지 등
3. 폐플라스틱 재생제품류	60% 이상의 폐플라스틱이 포함되어야 함.	장난감, 비, 쓰레기통, 화분, 건축재 등
4. 염화불화탄소(CFCs)를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	분사제로 오존층 파괴물질(CFCs)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머리용 스프레이, 면도용 포말, 방취용스프레이, 페인트분사제 등

4. 환경상품에는 쓰이는 환경마크

환경상품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마크가 붙어 있으며, 상단에는 볼록곡선형으로 “더 맑게 더 푸르게”라는 환경보전표어가, 하단에는 오목곡선형으로 환경마크 대상상품 등에 대한 의사결정조직인 “환경마크위원회”가 인쇄되어 있으며, 최하단에는 수평직선형으로 환경마크부여사유가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무엇보다도 환경마크를 부여받았는지 알려주게 된다.



5. 환경마크제도의 참여기관 및 주요기능

환경마크제도는 다음과 같이 환경마크위원회,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환경처 등 3개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마크위원회

환경마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조직으로 소비자보호단체, 유통업단체, 기업체단체, 환경단체 등에 소속된 자,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있는 자로 구성되며,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제1기 환경마크위원회(임기: '92. 4. 4-'94. 4. 3)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환경마크부여 대상상품선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환경마크부여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액수결정에 관한 사항 등

나.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사)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이다. 환경마크제도에 관한 환경보전협회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으며 환경마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제도운영조직으로서 환경마크제도사무를 관장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 환경마크 사용신청서 접수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환경마크 사용계약 체결에 관한사항
- 환경마크위원회 운영
- 환경마크부여상품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 환경마크제도운영기여금의 운용에 관한사항 등

다. 환경처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환경처의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으며, 환경마크제도의 운영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지도·감독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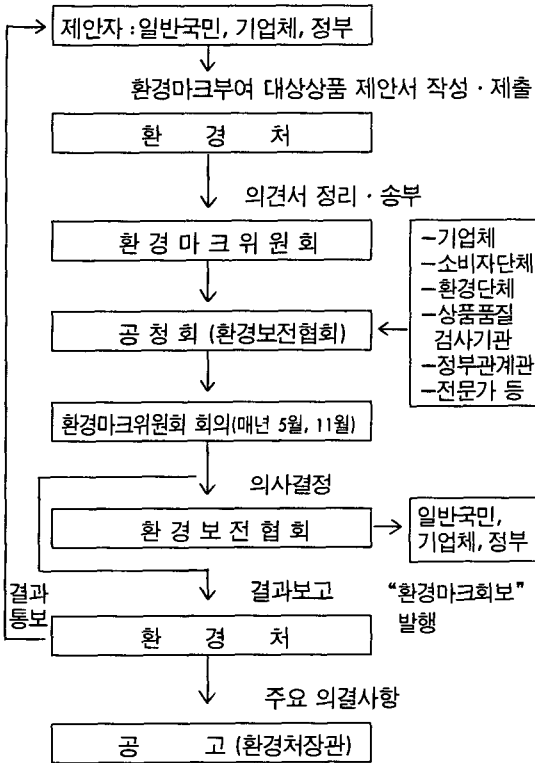
- 환경마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 환경마크부여 대상상품지정제안서의 접수 및 검토후 환경마크 위원회에 송부
- 환경마크위원회 위원 임명 등

6. 환경마크 부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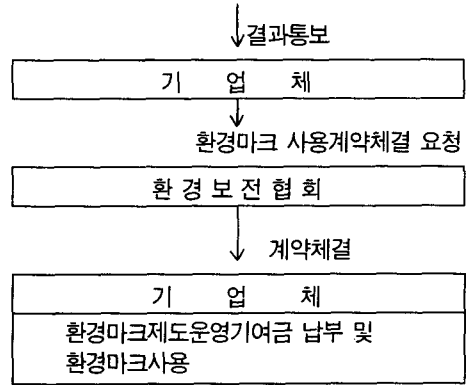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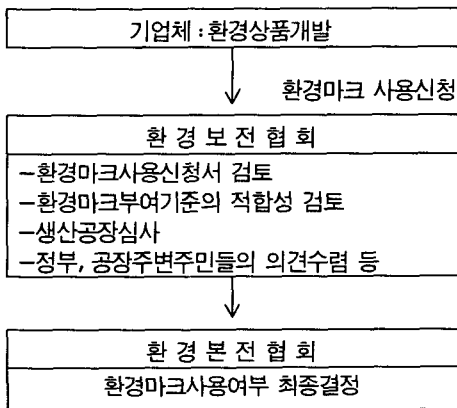
환경마크는 대상상품선정 및 부여기준을 마련하

는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제2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제 1 단계: 대상상품선정 및 부여기준 결정 등



나. 제 2 단계: 환경마크 사용신청(기업체)



7. 환경마크제도와 국내 타분야 품질인증제도

우리나라의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는 품질 개선과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특성에 맞는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 환경마크제도와 국내 타품질인증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품질인증제도	주관기관	적용범위	목적
“품”자 표시 마크제도	공업진흥청	공산품 생산 공장의 품질 관리체제	공정의 품질관리 상태 개선을 촉진
“전”자 표시 마크제도	공업진흥청	전기제품	불량전기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발생방지
“검”자 표시 마크제도	공업진흥청	공산품중 인명·재산상의 피해 또는 공공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품목	공산품사용으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의 방지
“Q” 마크제도	민간시험검사기관	공산품	공산품 품질의 개선 및 고도화
태극마크제도	한국귀금속 보석감정원	귀금속	귀금속 유통질서 확립
전통식품품질 인증제도	농림수산업부	전통식품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
환경마크제도	환경처	공산품을 포함한 소비재 제품	상품소비로 인한 환경오염량 감소

“KS 표시제도”도 일종의 품질인증제도로 볼 수 있으나, 품질보다 규격, 모델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호환성에 더 큰 목적이 있다. 특정 목적에 따른 품질 인증제도의 증가는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으나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커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차원의 품질인증제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 환경마크제도의 특성

환경마크제도가 공산품 또는 소비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일종이지만 기존 품질인증제도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첫째, 환경마크제도는 정부·민간위원회·민간단체 등 서로 다른 3개기관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제정·의사결정·집행 등을 모두 한 기관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다른 품질인증제도와 다르다. 즉, 환경마크제도의 도입·개선은 정부가 주도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정부가 임명한 10-20인 정도의 민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은 제3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환경마크제도가 자발적으로 민간차원의 환경보전운동이 되도록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환경마크제도는 정부가 도입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동 제도운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제도운영 초창기를 제외하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환경마크제도하에서 환경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마크사용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일정 액수의 기여금을 내게 되며, 동 기여금은 환경마크제도운영에 충당된다.

다만, 정부는 정부의 상징인 마크를 환경마크로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정부조달 물품구매시 우선지원, 환경마크홍보 등을 하므로서 환경마크제도운영 민간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품질인증제도는 대부분 독립된 법규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제도는 정부가 도입하고 있지만 독립된 법규가 없으며 기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민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

이 환경마크제도가 자발적인 민간차원의 환경보전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9. 외국의 환경마크제도 현황

환경마크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현재는 일본·캐나다·호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20여개국이 독일제도를 모델로 하여 시행중에 있거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1990년말 현재 독일은 3,800여개, 일본은 1,700여개, 캐나다는 500여개 상품이 환경상품으로 지정받아 유통되고 있다.

10. 환경마크제도의 기대효과

지금까지 환경정책은 타 정책에 비해 지원·권장보다 규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규제적 성격의 정책은 효과도 적고 집행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적 성격 정책보다 권장형·자발적 성격의 정책이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마크제도는 규제보다 “자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은 판매시 환경보호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저오염기술(청정기술 또는 환경보전형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환경마크를 부여받지 못한 제품은 공해상품으로 낙인찍힐 수가 있고 이것은 기업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상품기술개발 즉, 환경보전형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체 스스로 저공해제품이라고 주장·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객관적으로 실시하므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마크부여시 그 부여이유를 설명해주므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며 이것은 소비

자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상품선택을 도와 주므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비자의 소비생활방식을 환경보전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넷째, 기업체의 환경보전형 기술개발촉진과 소비자의 환경보전형 소비생활을 정착시켜 환경오염 및 환경과파를 줄이므로써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1. 환경마크제도의 전망

1979년부터 환경마크제도를 실시한 독일의 경우, 초창기에는 CFC를 분사제로 사용하지 않는 스프레이제품에 환경마크를 붙인 이래 소비자들은 CFC를 함유한 스프레이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관련 업계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이 분야에서 CFC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스프레이제품은 환경마크대상상품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기름과 가스보일러에 환경마크를 부착해준 이래 2년 동안 관련제품의 60% 가량이 저공해제품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환경마크제도는 정부의 통제나 규제 없이도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힘에 의해 기업의 저공해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마크제도의 성공은 소비자의 높은 환경의식이 전개되어야 하고 또한 기업체에서도 환경상품개발에 대한 기술여건이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1. 4월 동서조사연구소 등이 조사한 “국민생활 사회의식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조사대상 97.3%가 물가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근소한 차이로 96.7%가 환경문제를 지적하였다. YWCA가 1992. 2월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동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조사대상자의 95% 이상이 지지하였고, 약 98%의 주부가 환경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높은 환경의식은 본 제도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체들도 최근들어 “저공해”, “바이오”, “천연” 등의 광고문을 사용하며 상품판로 확장에 힘을 쏟고 있어 환경마크제도의 실시 필요성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마크제도는 시작할 때가 되었고 성공가능성도 밝다고 전망할 수 있다.

12. 맺음 말

환경마크제도가 과학기술이 발달한 선진국과 국민소득이 높은 여유있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환경상품의 일부는 가격경쟁 등으로 비환경상품보다 불합리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약간 이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마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일반환경문제를 해결한 후 시행하는 환경시책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환경문제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과학기술의 관점에서 환경마크제도는 정부의 금융·세제상의 지원없이도 자발적으로 기업체가 환경기술개발, 특히 청정기술(Clean Technology)인 저공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환경보전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무역장벽이 점차 무너져가는 추세와는 반대로 공해유발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합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같은 비관세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늦으나마 환경상품개발에 힘을 쏟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외국에서 제정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꼭 성공할 것이라는 보증을 없으나, 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환경마크제도가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